

교수학습개발지원위원회 규정

제정 2019. 05. 14.

폐지 2023. 11. 2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의 교수학습개발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미래교육혁신원장, 교무연구처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원격교육개발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. (개정 2020.04.07., 2022.04.20, 2022.06.08)

② 위원장은 미래교육혁신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22.04.20., 2022.06.08)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제3조(임무 및 임기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혁신적 수업모델 개발,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
2. 수업 질 개선을 위한 혁신적 교수법 프로그램 개발,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
3. 교수법 관련 워크숍 등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(개정 2020.02.04.)
4.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적 학습법 프로그램 개발,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(개정 2020.02.04.)
5. 학습법 관련 워크숍 등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(개정 2020.02.04.)
6. (삭제 2020.02.04.)
7. 교수/학습 관련 만족도 조사, 분석 및 평가, 개선 반영에 관한 사항 (개정 2020.02.04.)
8. 혁신적 최첨단 교육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
9. 시청각 기자재 관리 및 수업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10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서면결의 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,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평가활동)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에 따라 하되, 1년 단위로 평가 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년도에 반영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254, 2019.05.14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“학생역량강화지원위원회 규정”은 폐지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252, 2020.04.07)

이 규정은 2020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77, 2021.02.04)

이 규정은 2021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257, 2022.04.20.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332, 2022.06.08.)

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2472, 2023.11.24.)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